

청주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65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서균, 김혜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사이의 2024. 5. 8.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20. 2. 26. C에게 2,500만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25. 2. 26., 이자율 연 15.9%, 지연배상금율 연 18.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F은 2020.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뒤 그 무렵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2차전925호), 위 법원은 2022. 2. 16. "C은 원고에게 32,617,790원 및 그 중 24,489,7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3. 5.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의 아버지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3. 3.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H(3/11), 자녀인 피고, I, J, C(각 2/11)이 있다.
- 2) H, 피고, I, J, C은 2024. 5. 8.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피고는 2024.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협의시점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를 납부하였다거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C에게 C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욱

별지